



제429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포함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8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포함	3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종오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괴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 ----- ----- ----- -----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약취·유인¹⁾의 경우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약취·유인의 비율이 2020년 0.18%에서 2024년 0.28%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20년~2024년 20세 이하 범죄 피해자 통계]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94,371	85,129	91,885	93,355	98,590
약취·유인	169	200	243	301	278
비율	0.18	0.23	0.26	0.32	0.28

자료 : 범죄통계(경찰청) 편집

주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주요 피해자 1명에 대한 정보를 대표로 입력함

1) 유괴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에 해당함.

- 따라서 학교에서의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이고, 유괴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서는 모든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기준을 ‘기본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범교과 학습 주제(10개)’를 선정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범교과 학습 주제(10개)’에는 ‘안전·건강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²⁾.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

□ 교육부의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³⁾를 살펴 보면 범교과 학습주제 중 안전·건강과 관련하여 세부 주제로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등’을 선정하고, 편성 및 운영 방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편성 프로그램과 안전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서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⁴⁾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이트에서는 유괴 발생시 대처 방안과 예방 등 유괴와 관련된 콘텐츠가 등록되어 있는바, 학교에서 유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⁵⁾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교육’을 규정하였으며,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등은 교육부장관

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3) 붙임 1 참조

4) 현재 학교안전지원시스템으로 변경되었음(www.schoolsafe24.or.kr).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⁶⁾.

- 이에 따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⁷⁾」에서는 생활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유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생활안전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유치원 13시간, 초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10시간 실시하도록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아동복지법」 제31조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교육을 위한 실시주기(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및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⁹⁾.
- 이와 같이, 현행법에는 학교 등에서의 유괴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개정안 심사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7) 붙임 2 참조

8)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9) 붙임 3 참조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 제2조는 개정안을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유괴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부칙 2조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붙임 1]

[교육부 자료]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범교과 학습 개요

- (운영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_(10개)' 동일
- (운영방법) 범교과 학습 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관련자료) 「에듀넷·타-클리어」 자료 참고(교육정책→교육과정→교수 학습→범교과학습주제→인성교육 116번 게시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자료도 에듀넷·타-클리어에 탑재 예정(24.2월)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①안전·건강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인터넷)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51	-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편성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참고
	소방 안전교육	연 1회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소방훈련 별도)
	양성평등교육 ※ (23) 성교육→(24) 양성평등교육	15	-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 성폭력(디지털 포함),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적정 시수 유지
	보건교육	17	- 한 개 학년 이상 최소 17차시 이상 편성 - 교육부지침「24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을 계획·실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연 2회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운영 - 안전·건강 교육과 통합 운영 가능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교육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11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실시
②인성	인성교육	의무	도덕, 실과, 기술·가정, 정보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 운영 권장
③진로	진로교육	의무	교과(중고는 ‘진로와 직업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진로탐색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진로교육 실시
④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권장	통합교과(바·술·즐), 국어,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⑤인권	장애인식 개선교육	2	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이해수업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⑥다문화	다문화 이해교육	2	교과교육 연계 및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⑦통일	통일교육	의무	- 통일교육주간(5월 4주)과 연계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통일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적극 활용 ※ 5시간 이상 운영 권장(소관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⑧독도	독도교육	권장 (10시간 이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통합 - 독도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운영
⑨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권장	사회, 실과, 기술·가정, 경제, 통합사회,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운영
⑩환경·지속 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의무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참고

법교과 학습 주제 근거 자료(법령·고시·지침 등)

법교과 학습 주제	법령, 고시, 지침에 따른 의무 실시 여부		관련 법령(약칭), 고시, 지침 등
	세부 주제	의무 여부	
①안전· 건강	안전교육	의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아동복지법」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양성평등교육	의무	「교육기본법」 제17조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2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학교보건법」 제9조
	보건교육	의무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의무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법) 제26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 제13조 「학교급식법」 제13조 - 교육부, 연도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 교육부, 연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인성교육	의무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 교육부,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
	진로교육	의무	「진로교육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민주시민교육	—	「교육기본법」 제2조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 - 교육부, 연도별 ‘특수교육 운영계획’
⑥다문화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제5조 - 교육부, 연도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⑦통일	통일교육	의무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통일부, 연도별 ‘학교 통일교육 지원 사업 추진계획’
⑧독도	독도교육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 제5조 - 교육부, 연도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⑨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⑩환경·지속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의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4조, 제67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제4조, 제10조의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제28조

[붙임 2]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악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악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유 치 원	13	10	8	5	5	6	2	2
	초 등 학 교	12	11	8	5	5	6	2	2
	중 학 교	10	10	10	6	4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7	3	6	3	2
횟수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3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1회 이 상	학기당 1회 이상

[별표 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이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내 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 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 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 주변 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험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3.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미·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법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요령 알기 3. 각종 자연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4. 일생활속 응급처치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4. 일생활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중 학 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 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이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1.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상황 이해하기 3.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고 등 학 교	1. 기초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1.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상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붙임 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교육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련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교칙 학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성적 자기결정권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 학대 위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힘 상 황 에 따른 대처 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 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중·고등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 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5. 항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 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 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 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 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 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 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 모 교육
----------	---	---	--	--	---	--